

제 호

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

1. 기관·단체명:

2. 대표자 성명:

3. 사무소 소재지:

「항만기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9조제2항,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합니다.

년 월 일

해양수산부장관 직인